

의안번호	2210724
의 회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5.7.9.
추계번호	25D30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6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및 재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 전단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의무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25조의7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 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의무규정
3	안 제25조의8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운용·관리하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6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의7 (기금의 용도)	
3	안 제25조의8 (기금의 운용·관리)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임
 - 안 제25조의6제2항¹⁾에 따르면, 기금은 징수된 과징금(10% 한도), 정부 등의 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안 제25조의7²⁾에 따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의 예방·구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교육·홍보, 기금의 운용·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데, 그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과징금 수입액: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징수액	10,448	23,960	46,457	1,444	11,83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 1) 제25조의6(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25조의3에 따라 징수된 과징금에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 전단에 따른 차입금
 5.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 제25조의7(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표 2]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2,326	2,097	1,718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652	1,473	1,55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574	524	62
공시위탁 운영	100	100	105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출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의 예방·구제 사업의 규모,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교육·홍보 등을 예측하기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 기준 11억 8,300만원 이하)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 2025년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예산 17억 1,800만원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정부의 출연금 등 다른 재원으로 기금의 수입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정부의 출연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